● 전국도서관대회 제1주제발표

"司書資格制度" 이대로 좋은가

남 태 우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교수〉

1. 서언
2. 전문직의 요건
 2.1 전문직의 특성과 요인
 2.2 전문직요건과 라이브러리언쉽의 연계
3. 라이브러리언쉽(Librarianship)의 전문직성
 3.1 라이브러리언쉽의 개념
 3.2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직성
4. 라이브러리언쉽의 자격요건
 4.1 사서직의 자격요건
 4.2 한국의 라이브러리언쉽 교육기관의 현황
 4.3 주요국가의 사서직자격제도
  4.3.1 미국의 사서자격제도
  4.3.2 영국의 사서자격제도
  4.3.3 일본의 사서자격제도
  4.3.4 대만의 사서자격제도
5. 사서자격제도의 개선방향(결론에 대신하여)
6. 인용문헌

1. 서 언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가 급속하게 다변·다원화함에 따라 이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통제로서 현대인의 지식·정보에의 욕구는 필연적이다. 특히 미래 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식·정보의 생성, 개발, 처리, 이용, 축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현재의 도서관도 다원적인 정보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때이다. 현대적 의미의 정보센터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원의 개발과 연구기능, 평생학습의 장으로서의 비형식적 교육기능, 공공문화발전과 새로운 지식·정보의 창출과 같은 다원적·동태적 기능 수행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Daniel Bell은 '후기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라고 규정지으며 정보사회를 경제활동의 중심이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나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이행되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으며, Naisbitt는 정보사회로의 이러한 경향을 '거대한 물결'(Megatrends)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고도의 과학기술에 의지하는 동시에 반산업주의라는 성격을 띤 새로운사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에도 예언해 볼 수 있다. G. D.Evans에 의하면 미래의 정보센터는 1) 공공도서관의 기록물의 3/4 이상이 기계가독형 및 국가규모의 온라인 네트웍으로 이용될 것이다. 2)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서지적사업(이용)은 회원에 관계없이 연결될 것이다. 3) 모든 도서관 상호간의 통신은 75% 이상이 전통적 우편시스템보다 전자우편으로 대체 처리될 것이다. 4) 비디오텍스트의 이용이 확산될 것이며, 40% 이상이 비디오텍스트서비스방법에 의해 도서관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5) 도서관들은 상당량 위성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6) 정보센터로부터 케이블 TV 서비스가 확대되어 정보센터 회원에게 서비스가 될 것이며, 각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7) 소형컴퓨터이용은 정보센터에게 계속 증가되며, 소프트웨어 장서는 보다 일반화 될 전망이다. 8) 정부정보는 인쇄형태의 자료이용이 감소될 것이

며 온라인 배포가 급증될 것이며 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접근장소가 될 것이다(Evans 1987, 4)라고 판단하고 있어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종이 바로 전문직사서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변동상황속에서 지식·정보자료를 주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언쉽에 관하여 제2장에서 전문직의 요건을 3장에서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직성을 4장에서는 라이브러리언쉽의 자격요건을 분석하여 5장에서는 사서자격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함이 본 논고의 주된 목적이다.

2. 전문직의 요건

우선 職業(Occupation)과 專門職(Profession)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人間社會(Human Society)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전문직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전문직은 직업의 하부집합(Subset)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은 반드시 직업이라야 되지만, 한 직업이 반드시 전문직일 수는 없다.

미국 조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업을 구분하고 있다(Hall 1961, 68).

1. 전문직
2. 경영인, 상인, 사무원
3. 숙련노동자와 십장
4. 준숙련노동자
5. 비숙련노동자(농부포함)

위의 분류에서 보듯이 전문직은 직업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전문직의 개념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어떤 특별한 직업이 전문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는 전문화의 과정에 의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은 전문화(Professionalization)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전문화란 '한 직업이 전문직이 되기위해 그 특성들을 수정하는 동태적과정(Dynamic Process)으로 정의되고 있다(Vollmer and Mills 1966, vii-viii).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직업도 끊임없이 전문직을 향해 변화과정을 밟는다고 볼 수 있다. Parsons은 전문화의 발전과 증가하는 전략적인 중요성은 아마도 근대사회의 직업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전문직에 대한 연구는 직업의 일부로서 제반 사회현상과 사회조직속에서 다른 직업과의 구조적인 차이점과 특성을 발견해 내고 어떻게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전문화의 과정에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1 전문직의 특성과 요인

많은 사회현상의 범주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직이라 부르는 조직의 범주도 유동적이며, 뚜렷하지 않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업적 역할의 범주내에 있는 기준은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전문직이란 하나의 모형(Model)이며, 전문직모형은 전문직을 특징짓는 일련의 속성들(Attributes)을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문직은 理念型(Ideal Type)이다. 따라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Vollmer and Mills, vii-viii).

엄격하게 말하면, '전문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무의미하고 보다 적절한 질문은 '한 직업이 얼마만큼 전문화되어 있느냐'가 될 것이다. 전문화는 어디까지나 과정이기 때문에 직업분류를 할때 전문직대 비전문직의 2분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속적인 개념으로 전문직, 전문화를 설명하여야 한다. 즉 전문화의 정도는 측정할 수 있으며, 이 전문화라는 변수와 다른 사회, 경제적 변수들과의 관련규명은 라이브러리언쉽(Librarianship) 뿐만 아니라 직업사회학, 조작학 등 분야에서도 주제가 된다.

Webster 영어사전에 의하면 전문직(Profession)에 대해 비교적 설명이 논리적으로 잘 되어 있다. "전문직이란 특별한 지적식견과 기술 및 방법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즉 학문적인 원리의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간적이고 정밀한 준비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고, 조직 또는 합의의 힘에 의해 업적 및 행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직업이며 또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부단한 직업적 연

찬과 공공적 사업에 대한 봉사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전문직을 다른 직업과는 구분시켜 다른 직업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직업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온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은 전문직이 전문직으로 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고, 사회적 인식이 그 직업에 부수되는 권리, 의무, 신분, 대우등을 사회제도상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실정화되어 있을때 그것을 충분히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전문직의 기준에 대한 리버맨(Liberman)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범위가 명확하고, 사회적으로 불가결한 일에 독점적으로 종사한다.

2) 고도의 지적기술(intellectual techniques)을 행사한다.

3) 장기의 전문교육을 필요로 한다.

4) 개업자(practitioner)는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자율(broad range of autonomy)한다.

5) 자율의 범위안에서 한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진다.

6) 영리가 아니라 사회봉사(social service)를 동기로 한다.

7) 포괄적인 자치조직을 결성하고 있다.

8) 적용방법이 구체화되고 있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 (Liberman 1956).

또한 사회학자 Moore에 의하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4가지 전제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Moore 1970, 5-22) 즉 1) 고도로 공인된 교육훈련을 통하여 획득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2) 봉사이념 및 윤리성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제일로 중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3) 개개전문가 및 전문단체의 일원으로서 고도의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A.M. Carr-Saunders와 P.A. Wilson(Carr-sounders and Wilson 1933, 4)은 1) 특수한 훈련을 거쳐 쌓은 지적기술(intellectual technique)을 들고 있는데, 통상인에게는 결여된 이 지적인 기술은 2) 사회에 봉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Hall이 지적하듯이(Hall 1961, 79-137) 기술은 지식의 응용을 의미한 반면, 지적이란 말은 이론적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인 기술이라는 어휘는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론과 그 응용이라는 상이한 두가지 성향을 혼합전문직의 특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현대와 같은 사회의 구조적 논리에 부합되지 못한 점이라 하겠다. 즉 실제없는 이론이란 맹목적이고, 이론없는 실제란 공상적이다. (Theory without practice is blind, practice without theory is empty)라고 측면에서 보면 이론과 실제의 부합이란 전문화의 분화현상에서는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능직(craft)과 전문직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점에 대해 Whitehead는 기능직을 '통상적인 활동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실습을 통한 시행착오를 거쳐 수정되어 가는 직업'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전문직은 '그 활동이 이론적 분석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에서 도출되는 이론적 결론에 의해 수정되는 직업'(Whitehead 1948, 73-74)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요컨대, 독창적, 이론적 내지 체계적 지식에 바탕을 두는 전문직은 단순히 기술, 기교(skills) 또는 응용지식에 기저하는 일반직업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화(specialization)와 전문화는 반드시 같은 현상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령 용접공은 기술의 특수성만 따진다면 의사, 라이브러리언쉽만큼 특수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접공은 전문직이라고 하지 않고 숙련공이라고 하고 의사 또는 라이브러리언쉽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결국 단순히 특수화된 기술 또는 기교를 지녔다고 해서 한 직업이 전문화되는 것은 아니다. 특수화는 전문화보다는 더 광범위한 개념이며 전문화는 특수화의 하부집합(subset)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훌렉스너(Abraham Flexner)는 전문직을 판단하는 여섯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1)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실행자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지적활동(intellectual behaviour), 2) 실행자의 지식과 기술은 학문을 통해 얻는 것이며, 3) 그 기술과 지식

은 실제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며, 4) 전문직은 저마다 비전(秘傳)되는 특유한 교육의 원칙과 방법을 가지며, 5) 자율적 통제 및 발전을 가지며, 6) 그 활동은 이타적 동기에서 출발한다(Flexner 1915, 904)는 이론이다. 이 기준은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개정하여 쓸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붙여 발표하였다. 따라서 전문직은 철학, 지식, 실제의 3위 일체를 이루려 하는 이상형으로 인지한 것은 이전의 이론과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전문직의 특성은 體系的인 一團의 理論의 存在, 專門人의 권위, 社會的으로 認定받는 特權(privileges), 가령 전문인과 그의 고객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밀보장, 공식·비공식적으로 강행되는 윤리강령, 전문인들이 형성하는 文化등이 되겠다. 이것은 1957년에 Ernest Greenwood (Greenwood 1957, 45-55)가 직업에 관한 사회과학적 문헌들을 참고한 후 제시한 전문직의 특성들이기도 한데, 한 직업이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2 전문직요건과 라이브러리언쉽의 연계

상기의 요건을 充足시키는 근본적 이론은 랑가나단(Ranganathan 1963)의 '圖書館學의 五原則'(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이라고 하겠다.

이제 본질적인 입장에서 2.1절에서 규명한 전문직의 정의에다 사서직의 전문성을 대입시켜 그 이론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첫째 항목인 일정한 기본적 논리성을 가진 지적 식견의 소유인데 사서직은 이용자와 도서관자료와의 사이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개체로서 정보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처리·가공하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용자의 질의를 체정리할 수 있는 조직력도 가지고 있다. 기록정보를 수집, 정리, 축적 이용케 하는데에는 고차원적인 지적 식견의 소유자이여야 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둘째 조건인 특수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서직교육은 이미 대학에서 정규 교과과정에 의해 교수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학의 특색인 이론과 실제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실습의 기간이 일정기간 설정되어 이론을 실제에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14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정사서 자격증을 아무런 제한이 없이 교부해 주는 시스팀이 문제되어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에 특수한 교육이란 대학의 정규교육을 의미한 것이지 여타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사서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는 행위의 교육은 아니다. 다만 사서의 자질을 재고시키려는 일환으로 실시되는 계속 교육이나 재교육은 둘째조건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요소로서 앞으로 정책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째는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도에 대응해 준다는 측면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존립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이므로 논의의 여지가 없다. 適時(right time)에 適書(right book or information)을 適者(rigth reader)에게 서비스해 주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네째 항목으로서 구체적 봉사활동인데 도서관의 모든 업무는 봉사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익을 앞세우고 윤리를 지키며 최선의 봉사를 해주는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를 위한 직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도서관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읽을 권리, 알 권리, 정보이용의 권리, 도서관 이용의 권리 등이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사회에 도서관은 어떤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민중들의 문화유산인 것이다. 민중들의 문화유산인 도서관은 사회봉사물의 소유물인 것이다. 사회전체의 소유물인 도서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직은 전문직임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에게 주는 자격증이 주어지는 제도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세라(Shera)에 의하면 직업주의라는 汚名을 가진 전문직은 순수학문을 추구하는 공동체에서 參見人인가 아닌가에 대한 오래토록 지속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던 것이라 하여 직업주의와 순수학문간의 괴

리현상을 간결하게 언급해 주고 있다(Morehead 1980, 25). 中世대학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전문직 교육은 직업교육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전문직의 요건에다 라이브러리언쉽의 업무를 대비시켜 놓고 보아도 그 전문직성의 타당성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라이브러리언쉽(librarianship)의 전문직성

3.1 라이브러리언쉽의 개념

Librarianship을 어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Libr은 도서, ari는 장소를, an은 사람을, ship은 자격을 의미한 것으로 특정한 장소(도서관 및 정보센터)에서 도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의 자격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어미의 -ship을 좀더 분석해 보면 라이브러리언(librarian)은 도서관원, 사서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ship은 명사에 첨가되어 「職」, 「地位」, 「資格」, 「狀態」, 「性格」, 「手腕」 등의 명사를 만드는 것이 관용이다(椎名六郎 1969, 5).

또한 ALA용어사전에도 라이브러리언쉽(librarianship)을 '도서관자료의 수집, 보존, 조직과 이용 및 미디어를 통한 정보 배포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의 지식과 원리, 이론, 기법과 기술의 응용에 연관된 전문직'(profession)(Yong 1983, 130)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도서관학과부회 상임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976년 IFLA 제42차 총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Standard for Library Schools 1976"에서도 라이브러리언쉽을 사회의 지적유산을 보존하고 학문을 진작(振作)시키고, 새로운 지식의 생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형태로 기록한, 그리고 각종 형식으로 배포하는 모든 지식의 체계적인 조직에 관계하는 전문직. 전문직 종사자는 도서관학, 다큐멘테이션, 정보학의 기술과 방법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봉사의 수준에 따라 이용자의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서사적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수한 도서관 직원의 양성을 주체로 하는 이 방면의 교육에 대해서도 'Education for Librarianship'이라는 말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라이브러리언쉽 그 자체가 불명확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실정이며(Carnovsky 1937, 248), 이 말의 사용에 익숙한 사람도 실제 의미에 있어서 명확성을 상실한체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도서관의 전문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특별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라이브러리언쉽은 Library Science, Library Study와 동의어이지만 그 의미는 사용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전문직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미에 -ship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낱말로서 이를테면 Gentlemenship, Sportmanship과 같은 용어와 같으므로 전문직이라는 오랜 직업중의 하나라고 간주됨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Pierce Butler 또한 라이브러리언쉽은 전문직(profession)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Butler 1951), Harrod 역시 라이브러리언쉽을 사서의 전문직(The profession of the librarian)(Prytherch 1987, 451)으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이브러리언쉽 명칭자체에서도 그 전문성을 지닌 오랜 전통의 전문직종이라고 하겠다.

3.2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직성

정보센터나 도서관에 봉사하는 우리들은 사서, 도서관원, 라이브러리언(librarian), 또는 도서관전문가, 정보전문가, 정보분석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명칭의 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업무를 어떤 특별한 직능을 가진자라고 생각하고 전문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우기 라이브러리언쉽은 오래전에 고착된 전문성의 용어가 아닌가.

이러한 면에서 라이브러리언쉽의 여명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학자사서(Scholar-librarian)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학자사서란 Webster사전의 전문직에 대한 정의의 별항에서 이와 유사한 '학문적전문직'(learned profession)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데, '교양교육을 포함한 고도의 아카데믹한 학술연구를 기초로 하는 전문직 즉, 신학, 의학, 법학, 학자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 직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학자적전문직'(learned profession)과 '학자사서'(scholar-librarian)와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개념이 된다. 즉 학자가 아닌 한 학자사서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도출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적인 근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도서관의 한 특징은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그것이 학술전문도서관임과 동시에 학문연구소격인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곳에 종사하는 관원은 도서의 정리, 대출, 관리만을 담당하는 사무적 내지 기술적인 문헌직이 아니고, 학문 또는 연구적 성격을 띤 문헌직이었다는 점이다. 라이브러리언은 곧 학자출신이었으며 학자가 종사하는 문헌직이었던 것이다. 즉 'Scholar-librarian'이었던 것이다(이재철 1978, 3-4).

이러한 사례는 중국에 있어, 老子가 周나라 守藏室의 史출신이었다는 史實과 한서의 選者인 班固가 宮中의 장서와 문서를 관장하는 蘭台의 令史 및 校書郞이었다는 史實과, 目錄學의 시조로서 七略을 창출하여 漢書藝文志의 닦아준 劉向도 漢朝의 장서각이었던 石渠閣의 郞中 출신이었다는 史實,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숙종(1096-1105) 당시 海東第一의 文章家란 칭호를 받던 金黃元이가 王의 부름을 받아 延英殿에서 서적의 管掌職에 있었다는 史實 등이 이것을 입증해 준다. 또한 西洋의 경우에는 古代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도서관의 라이브러리언이었던 Pinakes의 편찬자인 Callimachus, 그리고 Apllonius가 동시에 시인이었고, Zenodtus와 Aristarchus가 유명한 평론가이자 편찬자이며, 호메로스연구의 권위자였다는 것과, Eratosthenes가 지구가 둥글다는 설을 주장하리 만큼 유명한 지리학자이자 천문학자였다는 사실 등이 그 예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철학자로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설 개인도서관을 최초로 개설한 도서관인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개인문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와 제자들에게 개방하였으며, 문헌분류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이집트왕들에게 도서관의 조직을 가르친 도서관학자이기도 하였다(Johson 1965, 53-54 : Norries 1939, 5 : Harris 1984, 39-40).

이러한 사실이외에도 학문적으로 이미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성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17C 불란서에서 활동한 Grbiel Naudê (1600-1653)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문헌정보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인류의 역사속에서 도서관이 발전하여온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총체적인 입장에서 '도서관설립법'(Advis pour dresser une bibliothêque) (Naudê 1950)을 저술하였는데, 이 저서는 1672년에 나온 문헌정보학 사상 최초의 개론서이며, 도서관사상과 도서관운영의 일반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시도한 저작이다. 여기에서 그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도서관은 모든 민중의 문화적인 세습재산을 보존하는 전인류의 시설이다. 따라서 전인류의 지식의 보고'라고 하는 보편주의에 입각하였다. 그래서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도서관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종래의 도서관사상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킨 학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라이브러리언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도서관사상의 계승자는 John Dury (1596-1680)인데 그는 Naudê와 동시대인 이다(Thornton 1957, 3-4). 듀리는 1650년 영국의 왕실문고 재직중에 '진보적 도서관관리자'(The Reformed Library Keeper)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종교개혁에 의하여 시대는 크게 변혁되었다. 따라서 도서관도 또한 종래의 인습을 타파하고, 도서관은 민중을 위해서 개방하고 민중으로 부터 사랑을 받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자료는 민중의 정신을 함양하고 학문을 향상시키는 일용품이다. 관리자인 사서는 책을 지키고 배급하는 사람이어서는 안된다. 학문의 안내자, 문화의 전달자와 도서관의 중개자이다. 따라서 '사서는 전문직이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숭고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학문을

함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러한 고급의 전문적인 사서에 대하여는 최고의 명예와 충분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민중으로 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직원은 형체에 불과할 뿐이다. 우수한 사서로 인하여 도서관은 보편적 학문을 발전시키는 기관이 될 것이다'(Dury 1892, 81-89)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은 확실히 Naudê의 사상을 계승시켰다고 볼 수 있다.

Libniz(1646-1716) 역시 Naudê의 도서관사상을 보편주의 입장에서 도서관과 사서직에 대한 이론을 전개시켰으며, 그는 도서관이 시민의 편의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순한 독서시설, 오락이나 수양의 집회장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백과사전', 모든 '과학의 보고', '인류혼의 보고', '모든시대의 위인들과의 대화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서직 역시 학자사서직의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 그 후 Fridrich A. Ebert(1791-1834)는 라이브러리언의 자질문제와 급여문제를 제기하여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문제는 뒤의 Schrettinger, Rullman 등의 사서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여 1876년의 Dewey의 Library School Economy의 개설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아 오늘날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훌륭한 학자사서들, 즉 전문직성의 라이브러리언쉽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갖고 있었으면서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직성을 논란거리로 삼는다는 그 자체는 넌센스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영미 양도서관협회에서는 전문직의 직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판물과 정보, 이용자 및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인 도서관서비스의 원리를 이해하며, 이에 입각한 독립된 판단을 행사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더욱 특수한 도서관 기술과 그 처리방법의 정통함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서의 라이브러리언쉽은 담당업무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업무의 근본원리와 그 목적 및 그것의 업무와 도서관의 전체적 목적과의 기능적 관련에 대한 전문직적 판단과 철저한 이해가 요구되는 직종이라고 하겠다. 또한 ALA는 1976년에 도서관학교기준(Standard for Library School)에서 도서관학교육은 사서의 전문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Wasserman이 사서직의 전문성은 문헌정보학교육을 기초로 하고 문헌정보학교육은 사서가 미래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하고, 내일의 기능 및 지식의 통찰력을 추구하도록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와 동일한 맥락이라고 하겠다(Asheim 1978, 245).

또한 ALA에서 1938년에 제정하고 1975년에 개정한 '전문직의 윤리헌장'(Standard on professional ethics)에서 도서관전문직의 일원은 도서관 전문직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음의 몇가지 윤리규범은 라이브러리언쉽에 있어서 비록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기본적인 성격의 요소들이다. 1) 사서는 도서관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의 원칙을 옹호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 2) 사서는 도서관이 그 일부로 되어 있는 모기관의 정책을 알아야 하며, 도서관권리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은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3) 사서는 도서관 이용자와 도서관 사이에 실제하는 주요비밀관계(confidential relationship)를 보호하여야 한다. 4) 사서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을 희생시키면서 사사로히 금전적이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여야 한다. 5) 사서는 직원의 임명, 유임, 승진문제를 취급함에 있어 기회균등과 공정한 능력평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6) 사서는 어느 한 개인의 자질을 평가할 경우 개인의 신상문제 발표에 관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지침에 따라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편견없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등의 라이브러리언쉽의 윤리강령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직성의 요소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보완적 요소들임에 분명하다. 또한 일본도협도서관의 '문제조사연구위원회'서는 국민의 자료나 정보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적 역할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성을 1) 이용자를 아는 일 2) 자료를 아는 일 3)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시키는 일 등의 3가지로 그 전문적책무를 요약하고 있는 것은 ALA의 전문직의 윤리헌장에서 나타난 전문직성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ALA 제29차 년차회의에서 Kaplan은 도서관에 대해서 1)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기억해야 할 인류문화유산의 요소(지식)를 보관하는 문화적 역사적 기능, 2) 인간지식의 성숙과 그 지식에 접근하는 기능, 3) 그 지식이 서서히 정보로 변질되는 지식의 처리과정을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는 기능, 4) 미래의 발전을 위한 조건과 연구조사의 도구로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의 4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Kaplan 1965, 9-10)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성을 도출시켜 볼 수 있는데 정보나 기록지식을 보존관리하는 측면의 전문성, 그 정보나 지식에로의 이용자를 접근하게 해주거나 직접 봉사하는 정보접근성에로의 매개적 전문성, 즉 이용자와 정보센터에 소장된 정보자료와의 매개체로서의 전문성과,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를 개혁하게 하는 혁신적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 전문성으로서 문화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케 해 주는 기능에로서의 라이브러리언쉽이라고 하겠다. 특히 마지막부분은 1970년대 초 정필모박사가 주장한 문헌정보학을 "학술과 문화의 창달을 위한 조건조성의 원리 및 그 체계와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정필모 1983, 95)이라고 제기한 이론과 궤를 같이하는 성격이라 하겠다.

4. 라이브러리언쉽의 자격요건

도서관의 3대요소를 건물, 도서, 사람, 즉 도서관시설과 도서관자료 그리고 도서관 직원이라고 칭한다. 여기에 도서관이용자를 더해서 4대 요소라고도 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서관자료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직원의 중요성은 주지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은 건물의 중요도는 10% 자료의 비중은 20%, 그리고 사서의 비중이 70%라고 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처럼 중요한 사서의 역할은 마땅히 그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또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4.1 사서직의 자격요건

문헌정보학교육의 목적중의 하나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사서를 양성, 배출하는 것이므로 우선 사서의 자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은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서의 자격요건을 근거로 하고 있다. 1963년에 최초로 제정되어 그 내용의 후진성과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가지 미비한 점으로 오랫동안 도서관계와 학계에 주된 불만의 요소가 되었던 도서관법은 1987년에 다시 제정한다는 취지하에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마는 성안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법(1987. 11. 28 법률 제3972호)에 의하면 사서직원의 자격이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정사서 및 준사서에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됨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세분화하고,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종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사서업무종사 경력이 있고 소정의 강습을 받은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는 등 사서직원의 자격향상을 위하여 그 경력, 학력 및 연수과정을 상향조정(제5조 및 별표 3) 하였다. 그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급 정사서 자격요건 :

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 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에 관한 연구경력이 6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

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상의 정사서 자격요건 중에는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거나 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사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들이 있으므로 준사서의 자격요건도 정사서의 자격요건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급 정사서의 자격요건 :

1)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도서관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도서관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4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사서의 자격요건 :

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

2) 전문대학(종전의 실업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한 사람

전문대학 도서관학과를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준사서가 될 수 있으며, 준사서로 도서관 근무경력을 4년 이상 쌓은 후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2급 정사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사서에 요구되는 학력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된다.

이러한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임용령과 승진규정에서는 자격기준 자체가 보완이 되지 못하고 있어, 현직에 종사하는 사서가 그들이 1,2급 정사서의 자격이 없어도 승진이나 근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사서직급이 행정상 낮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자격기준을 공공도서관에도 적용되어 도서관장의 임용이나 사서의 임용, 승진이 자격기준에 합당하도록 관계법과 연계되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직성을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실정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그 자격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서의 전문성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받고는 있지만, 그 역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현상이 문제라고 하겠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 된다. 이에 관련된 것은 그 해결책에서 다시 상세하게 논의되어 질 것이다.

4.2 한국의 라이브러리언쉽 교육기관의 현황

도서관법이 정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명시된 교육기관은 전문대학도서관과와 대학의 도서관학과 및 문헌정보학과이다. 이 과를 졸업한 사람들과 더불어 도서관,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2급 및 1급 정사서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석박사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의 도서관학과와 문헌정보학과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준사서, 2급 정사서 및 1급 정사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지정교육기관도 문헌정보학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준사서 과정의 전문대학 도서관과가 6개 대학, 4년 학부과정의 대학이 30개 대학, 대학원 석사과정이 12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며, 4개 대학에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또한 2급 정사서 자격과 더불어 사서교사자격이 부여되는 교육대학원의 사서교육전공과정이 22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정규교육기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외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

시키고 사서자격을 주는 지정교육기관에 속하는 일종의 특수과정을 성균관대학교의 한국사서교육원과 계명대학교의 사서교육원이 개설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도 정기적으로 사서직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를 설치년대 별로 일람표화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 교육기관명(1990년 현재)

과 정	기관명(설치년도)		계
박 사	성균관대학교대학원(1974) 연세대학교대학원(1980) 중앙대학교대학원(1983)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1988)		4
석 사	연세대학교대학원(1957) 성균관대학교대학원(1971) 경북대학교대학원(1978) 청주대학교대학원(1984) 계명대학교대학원(1989)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1989)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1959) 중앙대학교대학원(1972)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1983) 상명여자대학교대학원(1985) 부산대학교대학원(1989) 전남대학교대학원(1990)	12
학 부	연세대학교(1957) 중앙대학교(1963) 경북대학교(1974) 효성여자대학교(1977) 부산여자대학교(1979) 계명대학교(1980) 동덕여자대학교(1980) 상명여자대학교(1980) 전북대학교(1980) 서울여자대학교(1981) 한성대학교(1981) 동의대학교(1982) 경성대학교(1983) 공주사범대학(1983) 부산대학교(1984)	이화여자대학교(1959) 성균관대학교(1964) 숙명여자대학교(1976) 강남대학(1978) 청주대학교(1979) 덕성여자대학교(1980) 명지대학교(1980) 전남대학교(1980) 충남대학교(1980 한남대학교(1981) 대구대학교(1982) 경기대학교(1983) 전주대학교(1983) 건국대학교(1984) 광주대학교(1984)	30
전 문 대 학	부산여자전문학교(1970) 계명전문학교(1974) 창원전문학교(1980)	숭의여자전문학교(1972) 동래여자전문학교(1979) 인천전문학교(1981)	6
기 타	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1965) 계명대학교 사서교육원(1989)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1982)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1983) 국립중앙도서관 강습과정		5

도서관의 발전은 사서의 능력에 달려 있고, 사서직의 양성은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도서관과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부과정, 전문대학과정 그리고 각종 학교과정 및 단기과정 강습회를 통한 일련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정보센터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어지고 정보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현재는 대학원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도기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로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하여 양성되는 시스팀과 유사한 형편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곧 전문사서직의 발전에 가장 진보적인 미국에서 가능성과 함께 이미 실시되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 or reference information librarian)와 전문연구사서(research librarian)에 맞추어 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는 1) 대학원 및 학부 도서관학과, 2) 도서관·정보학대학, 3) 대학·학부과정에 설치된 사서과정, 4) 단기대학에 설치된 사서강습 5) 하기강습, 6) 야간강습, 7) 통신강습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高山正也 1980, 26). 이처럼 각국마다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차이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이 특성있게 운영되고 있다.

4.3 주요국가의 사서자격제도

4.3.1 미국의 사서자격제도

1923년에 발표된 윌리암슨(Williamson)보고는 라이브러리언쉽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 보고서에서 윌리암슨은 도서관직을 전문업무와 보조적 일반업무로 식별한 최초의 도서관인이 되었다. 또한 그의 권고에 따라 1924년에 설립된 ALA 도서관교육부의 활동은 미국의 라이브러리언쉽의 학문화에 실질적인 추진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Carnegie 재단의 「도서관활동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26년에 설립된 「시카고」대학 대학원 도서관학교는 도서관학이 전문적 학문이라는 도서관계의 주장을 세상에 널리 인식시키게 되었다(임태삼 1989, 76). 1948년 12월 전국도서관교육협의회(Council of National Library Education)주체로 「프린스톤」대학에서 개최한 도서관학교육회의에서는 ALA도서관학교육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1925년 이후 수행하여 왔던 도서관학교의 인정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을 요망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개정에 착수하여 인가기준(Standards for accreditation)을 공포하였는데 그 주요점은 1) 기본적인 도서관교육은 고교졸업후 5년으로 할 것, 2) 전문도서관학교육은 1년으로 하며 광범한 교양을 갖춘 4년제 대학졸업자를 입학자격으로 할 것, 3) 1년의 전문교육은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서의 적응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일 것, 4) 학위는 종래의 5년제 학사를 폐지하고 석사로 할 것, 즉 이상의 기준에서는 대학원 수준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학부나 초급대학의 코스는 인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시말하면 ALA에 인정위원회가 있어 대학원 수준으로 사서양성을 하고 있는 도서관학교의 인정을 행함으로서 졸업생을 프로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목적의 주된 것은 결국 도서관학의 전문교육적 개선을 통하여 도서관 봉사를 개선하는데 있다. 그리고 ALA심사위원회는 인가기준 달성학교를 다음과 같이 3종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제1종 학교는 Bachelor 학위를 가진자를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며 Advanced Study라는 고급과정이다. 둘째, 제2종 학교는 4년제의 College Study Course를 마친자로 입학자격을 인정하려 1년간의 도서관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학교이다. 세째, 제3종 학교는 초급대학과정을 마친자를 입학자격요건으로 1년간의 도서관교육을 이수케 하는 학교이다. 결국 미국의 도서관전문직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만을 인정하므로 학생들의 학부 전공주제를 배경으로 하여 주제전문가를 양성하거나 혹은 도서관의 기능이나 관종에 따른 전문사서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4.3.2 영국의 사서자격제도

영국에서는 1882년에 Henry Tedder의 제안을 받아들여 영국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서고시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 영국

에서는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협회(LA)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했다. 사서고시가 처음 치루어진 1885년 부터 1960년대까지 영국의 도서관학 교육은 이 시험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 졸업함과 동시에 사서자격증을 발급받는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영국도서관협회가 시행하는 사서등록검정시험(Register and Examination Excutive Committee)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19년 런던대학에 2년 과정의 도서관학교가 설립되면서 이 학교에서는 사서고시의 출제 범위를 나타내는 도서관협회의 공식 교수 세목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체의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통과된 학생들에게 자체의 증서를 수여하였다(최성진 1988, 286). 그리고 1년과정의 도서관학 전문강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8개교였고, 이 모든 과정의 입학자격은 대학을 졸업한 자들로 하였다. 런던대학을 제외한 이들대학은 모두 도서관협회의 사서고시를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국도서관협회 회원의 대부분을 이루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런던대학의 교육내용이 이론적 측면에 치중한다고 비판하였으나 학위수여권이 있는 종합대학에 설치된 도서관학과 수가 늘어나고 학위 수여권이 없는 전문대학에 설치된 도서관학과도 새로운 교육법으로 「전국학위수여심의회」를 통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협회의 사서고시제는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대학에 의한 자율적 도서관학 교육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최성진 1988, 287). 그러나 영국에서는 사서가 되려면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도서관학 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도서관협회의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자격시험에는 대학졸업자를 위한 전문자격시험과 일반인 전문자격시험의 두 종류가 있는데 대학졸업생 전문자격시험은 대학졸업자로서 도서관학과에서 특수한 과정을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고 일반 전문자격시험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으로서 2년간의 도서관학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대학졸업자로서 도서관학과의 특수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들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이 자격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시험은 대개 1년의 사서교육을 마친후 응시할 수 있고 2부는 2년의 사서교육을 마친후 응시하게 된다. 전문자격시험을 위한 2년과정과 대학졸업자를 위한 1년과정은 주로 상공예대학 또는 몇몇의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영국도서관협회의 공인사서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사서에게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준회원과 정회원제도인데 준회원은 도협의 사서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학위를 획득하여 시험에서 면제된자와 도협에서 인정하는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중 1년은 사서시험에 합격한 이후라야, 또한 이중 최고 1년 까지의 도서관학 이수과정년한을 실무경력의 일부로 인정받음)이 있어야 하며, 2년이상 도협회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준회원으로서 5년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일편의 전문분야 논문이 있을 경우 협회의 추천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한순정 1978, 11-12). 현재 영국에서는 공공도서관 사서가 되려면 반드시 공인사서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타 종류 도서관에서도 전문업무를 맡는 사서들은 공인사서 자격이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영국에서는 사서가 직접 간접으로 도서관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검정을 받아 준회원, 정회원이라는 칭호를 부여 받는다.

4.3.3 일본의 사서자격제도

일본의 도서관법에서는 사서의 자격요건으로서 1)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사서보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사서강습을 수료한 자이다. 또한 직원의 종류로는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하는 사서와 사서의 직무를 보조하는 사서보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은 대학이 문부대신의 위촉을 받아서 행하고, 사서 및 사서보의 강습에 관하여 이수해야 할 과목, 단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문부성령으로 정한다. 단, 그 이수해야 할 단위수는 15단위를 내려가서는 안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같이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직요건들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배치

〈표 2〉 주요국의 사서전문직 자격제도 현황

국 명	자 격 종 류	구 비 조 건
영 국	1. L.L.A (Licentiate of Lib. Assoc.)	1) 학위취득 1년후 2) L.L.A취득 3년후 A.L.A자격 취득가능
	2. A.L.A (Associate of LIB. Assoc.)	1) 대학(도서관학과)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1년 사서교육) 2) 정규대학졸업자로서 L.L.A취득자
	3. F.L.A (Fallow of Lib. Assoc.) (공인사서제도)	1) A.L.A자격취득후 5년간 실무경력자 2) A.L.A자격취득후 논문 1편 이상 제출자
프랑스	1. Conservateur	1) 국립도서관학교 출신 2) 고문서 취급 면허권자
	2. Soces-biblio-thecaies (공인사서제도)	1) 일반대학졸업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3년이상의 도서관경력 소지자
미 국	1. Assistant Librarian 2. Associate Librarian	1) 도서관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1) 도서관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도서관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3. Librarian (공인사서제도는 없고 학위로 결정)	1) 도서관학 관련 석·박사학위 소지자
일 본	사서 및 사서보	1)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도서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서강습을 수료한자 : 사서강습은 문부대신의 위촉하에 행해지며 상세한 내용은 문부성령으로 정하고 있음. 2) 대학 졸업자로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전 국립 도서관 직원 양성소나 국립 도서관 단기대학, 현 도서관 정보대학에서 사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도서관학, 도서정보학 전공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대 만	사서	1) 도서관학과 및 자신과학(information science)을 전공한 사람

*자료 : 1. 안용태, "영국의 도서관학교 교육",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보, 134호, 1978. 9.
2. Saunders, W.L.(ed.), *British Librarianship Today,* London, L.A., 1976
3. Juckson, Mileo M.(ed.),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Developments in Librarianship,* Westport, Conn : Greenwood Press, 1981.
4. 이필재,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사",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보, 133, 1978.
5. 日本 圖書館學會 研究委員會 編集, 圖書館學の 教育, 東京, 日本アソエーシ, 1983.
6. 손정표, "대만의 도서관교육", 국회도서관보, 1981. 9.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둘째는 사서의 양성이 강습주체로 되어 있으며, 셋째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강습의 교육기준이 시대의 요청에 미치지 못하고, 네째는 대학에서의 도서관에 관한 과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섯째는 사서가 교육공무원 특례법상에 제시되지 않아 연수의 근거를 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강습주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서들의 교육에 보다많은 관심을 필요로 한다.

4.3.4 대만의 사서자격제도

대만이 미국의 도서관학교육제도에 접한 것은 1920년 중국에서 부터였으나, 대만의 대학에서 전문직 사서교육이 시작된 것은 1955년에 대만사범대학의 사회교육학과가 중등학교 사서교사를 양성할 목적에서 1961년에 설립한 국립대만대학교의 도서관학과이다.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따로 제정된 도서관법은 없으나 도서관학과, 자신과학(information science)을 전공한 대학졸업자들을 전문직 사서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협회의 인가나 도서관학교육과 개입은 없으나 미국의 도서관학교육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정식교육기관에서 소정의 도서관학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각국의 사서자격제도를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5. 사서자격제도의 개선방향(결론에 대신해서)

미국에서의 사서직은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가 중심이 되고, 영국에서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강습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고 있으나 정보검색분야에서는 검색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그 분야에서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서양성을 주로 학부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근년에는 석사과정이 그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어떤 과정의 완수가 자격의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어떤 제도나 기준에 얽매인 그릇된 시각으로 본질을 파악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곧 미, 영, 일의 사서교육제도와 비교해 보았을때 그와같은 국가들의 제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회적, 문화적 또는 교육적 변동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와같은 나라들에서의 제도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정의에 보다 근본적인 논거를 두고자 한다. 국내에 도서관학이 도입된지는 일천하지만 관련분야에 많은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기여는 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면에서는 질적인 면이 도외시 될 정도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온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제는 양적인 팽창에 따른 질적저하를 우려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한분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여에 존재가능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그 분야가 안고 있는 내적, 외적 모순을 척결하고자 하는 시각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문헌정보학은 관념의 學에 보다는 실천의 學에 가깝다고 본다. 그리고 전문직이란 공공의 이익 즉 공적서비스를 제일로 여긴다. 달리 표현하자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가 직접 접촉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사서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문직으로서의 실천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실천적인 측면을 수행하는데는 사서직의 전문직성에 대한 사서집단과 최소한의 이용자집단(서비스의 수혜자)의 인식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적 수요에 따른 공급의 원칙이 무시되어온 국가적 관행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모순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켜야할 시점에 처해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통해서만이 제모순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브러리언쉽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부적 모순이나 단점을 보완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보완책 내지 개선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1. 사서자격증 제도의 개선이다.

여기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1) 학부 문헌정보학과 졸업자(140학점 이수자)에게 일종의 사서국가고시제도의 도입으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2) 도서관협회를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협회에서 치루는 사서자격고사 또는 인정고시, 또는 미국식 인정기준을 설치하여 등급을 메기는 방법, 3) 교육과정의 상향조정이다. 즉 학부과정에서 사서자격을 받는 것이 아닌 대학원 석사과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이다.

2. 사서(라이브러리언)의 명칭문제이다.

사회적으로 사서직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있지 못한 차제에 1의 조건중 어떤 하나가 충족된다면 정보를 물질, 에너지에 이은 제3의 요소로 인식하여 그 생성, 가공, 전달, 이용 및 축적을 의식적으로 행하는 전문직 사서의 명칭은 정보화의 추세에 따라 그 명칭변경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복덕방이 공인회계사, 또는 박물관의 학예사, 학예연구관, 학예관리관처럼 쇄신을 시켜 그 인식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가령 문헌정보사, 문헌정보관리관 또는 정보관리사, 정보관리관등의 명칭으로 변경시켜야 할 시기라고 본다.

3. 실습관의 모델화의 방법이다.

전문직으로서의 고유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또는 유수한 대학에 전문적인 실습모형관을 설립하여 3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습을 하여 전문직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4년간 배운 이론을 실제에서 충분히 적용 응용하여 봄으로서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산·학간의 인적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갈등의 해소가 될 것이다.

4. 학부과정의 교과과정의 진보적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보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에서 본 시각이다. 한 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수준은 그 나라 고등교육시스팀의 구조와 국가과학기술정책, 정보센터인력의 수요와 공급, 국립도서관/정보센터의 활용 및 하부구조(네트웤), 정보센터가 갖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 전공에 대한 자국어로 된 교과서나 문헌의 질적, 양적 등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되어야 한다(엄영애 1990, 64).

5. 전문직단체의 출현 즉 관종별사서직의 단체등이 발족되어야 한다.

6.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시킬 윤리강령 및 도서관권리선언 등이 성문화 되어야 할 것이다.

7. 전문직 제교육제도 시스팀의 제도화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가지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Mary Casteleyn이 지적한 바 처럼 1) 새로운 발전에 따른 보조와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2) 승진의 전망을 촉진시켜 줄 수 있으며, 3) 능력을 개발, 유지시켜 줄 수 있으며, 4) 전문직의 특수분야를 교육시킬 수 있으며, 5) 문헌정보학의 실제적인 것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실용적인 지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6) 개인직업에 만족감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7) 전문직업태도를 개발시켜 주며, 8) 기존의 질적 소양을 고양시켜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Casteleyn 1981, 123).

이상의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우수두뇌들의 입학으로 자질향상이 꾀하여 질 수 있으며, 2) 공통교재의 필요성으로 인해 표준교재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3) 학자간의 공동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며, 4) 이로 인해 철학 및 이론의 미비한 우리 학문분야의 총체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5)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잇점들이라고 하겠다.

參 考 文 獻

Butler, P. 1951. Librarianship as a profession. The Library Quarterly, Vol.xxi, No.4.

Carnovsky, L. 1937. Why graduate study in librarianship. Library Quarterly, Vol. 7, No.2.

Carr-Sounders, A.M. and Wilson, P.A. 1933. The Prossion. Oxford, Clarendon Press.

Casteleyn, M. V. 1981. Planning Library Training Programmes. London, Andre Deutsch.

Dury, John. 1892. Reformed library keeper and its author's career as librarian in the library, No.4

Evans, G. E. 1987.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2nd ed.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Greenwood, E. 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Vol.2(July 1957)

Hall, R. H. 1961. Occuptation and Social Structur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Harris, M. H. 1984.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Compact Textbook Edition.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Inc..

Johnson, E. D. A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New York, Scarecrow Press. Inc..

Moore, W. 1970. The Professions: Roles and Rules.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Naudê, G. 1950. Advise on establishing a library. Noted by Archer Taylor. Los Angels, Univ. of California Press.

Norries, D. M. A History of Cataloguing and Cataloguing methods. London, Grafton.

Prytherch, R. 1987. Harrod's Librarians' Glossary of terms used in librarianship, documentation and the book crafts and Reference Book, 6th ed. Aldershot, Gower.

Ranganathan, S. R. 1963.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Reprinted. Bombay, Asia Publishing house.

Shera, J. H. 1972. The Foundation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New York, Becker & Hayes.

Vollmer, H. M. and Mills, D. L. 1966. Professionalization.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Whitehead, A. N. 1948. Advantures of Ideas. Great Britain, Pelican Books.

Yong, H. editor.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高山正也, 長田長一, 西荒井學. 1980. 도서관, 情報學敎育關係 資料の 分析,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18.

엄영애 등저. 1990.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椎名六郎. 圖書館學槪論. 東京, 學藝圖書(株)

정필모. 1990. 문헌정보학원본, 제3개정판.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최성진. 1988. 도서관학 통론, 증보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한순정. 1978. 사서의 사회적지위 : 영국과 우리나라의 사서의 비교. 국회도서관보, 제15권 제14호.